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하며,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 추가(안 제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0조제1항 제20호)

선박금융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

하는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
함

다.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안 제84조제2항 및 제
3항)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10%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
라 수행하는 보증업무

제84조제2항제1호 중 “40”을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65”
를 “7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0”을 “7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을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5”를 “6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5”를 “5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5”를 “65”로, “45”를 “55”로, “40”을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

0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9.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 ----- ----- -----. 1. ~ 19. (현행과 같음)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생략)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현행과 같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억원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억원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④ ~ ⑧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락처	(044) 215 - 4321